

동 물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2020. 9.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동 물 복 지 정 책 과)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안이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를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함.

(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보험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함.

(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다. 보험의 보험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이하 “맹견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단, 맹견의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호의6까지”를 “제2호의7까지”로 한다.

별표 제2호거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의6”을 “제1항제2호의7”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소유자가 법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6	100	200	3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영의 시행 이전 맹견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4호의 보험에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이하 “맹견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u> <u>②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단, 맹견의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 략) 3. 법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부터 <u>제2호의6까</u>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제2호의7까지-</u>

<u>지</u>,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 호·제5호·제9호부터 제15호 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연 락 처	(044) 201 - 2372